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청구인 1. 위 상 선
2. 이 규 순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 의 7 (상원빌딩 2층)

비청구인 보건사회부 장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1994. 1 경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 생계보호기준은 청구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걸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경위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모두 생활보호법상의 거액보호 대상자로서 그 무렵부터 관할 보호기관인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호급여를 받아 1992. 1 이후 현재까지는 매월 금 46,000 원, 1993. 1 이후 작년 말까지는 매월 금 56,000 원, 1994. 1 이후 현재까지는 매월 금 65,000 원의 생계보호급여를 받으며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호급여액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보호급여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확인을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이 남 진 법륜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53 7(상원빌딩 3층)

다.

2.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보장

가. 우리 헌법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 생활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이와 같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헌법이론상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함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만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역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보호의 수준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참조).

다. 청구인이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개의 국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적 규정설, 법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국민 개개인이 사법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권리로서 청구할 수는 없고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추상적 권리설,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 불충분한 경우에도 그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개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 현실적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다

고 하는 구체적 권리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으며, 헌법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추상적 권리설
도 보여지나 최근들어 위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불완전하
나 구체적 권리설로 이해하는 학설이 있는 바, 통 학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모든 헌법규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법생활에서 그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제한규정이므로 어떤 규정은 재판규범이고 어떤 규정은 프로그램적 규정이라는 헌법 규정상
의 명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는 자유권적 기
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보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보다 절실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
는 경우 국가의 과세와 부표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입법기관에게 입법촉구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규
정상 불가항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정원권 국가배상청구권 등과 동
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영성, 헌법논총 제 2 집 제 200 쪽 이하, 헌법재판소).

라. 생각컨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그 실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지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하에서는 생활보호
법상의 생활보호가 국가의 경제적 능력 여하에 따라 그 급여 유무 및 수준이 결정되는 반사
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서 그 권리자인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며, 따라서 국가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헌법 생활보호급여의 현황 및 그 위헌성 여부

가. 헌법 생활보호법은 보호의 수준에 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잉 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

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고, 나아가 현행 급여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현재 청구인과 같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호기준은 백미가 1인당 매월 10킬로그램, 정백이 1인당 매월 2.5킬로그램, 부식비가 1인당 매일 820원, 연료비가 1가구당 매일 675원으로서 1인당 매월 금 65,000원에 불과한 바, 과연 이와 같은 보호수준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활보호법에서 보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 수준" 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보호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여 수준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나라의 1인당 최저생계비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동 최저생계비와 위 생활보호급여기준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순일 박사와 한국국방연구원 김창희 박사가 최근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1인당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대도시에서는 금 141,400원, 중소도시에서는 금 126,400원, 농촌지역에서는 106,100원으로서 전국적으로는 금 118,6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인들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로서 금주리고 헐벗음을 갖 벗어난 생존적 수준보다는 나은 생활로서 이 사회에서 지나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편 이와는 달리 단순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생존적 최저생계비는 1993 현재 금 105,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함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 생존적 최저생계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박순일 등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로서 금주리고 헐벗음을 갖 벗어난 생존적 수준보다는 나은 생활로서 이 사회에서 지나친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변호사 이 남 진 법률사무소
서울 시조계시로13-155 7(상원빌딩2층)
02-377-3333

해석되면 되었지 그 이하의 수준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해석과 관련하여 볼 때 더욱더욱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함은 명명백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그렇다면, 생활보호법의 위와 같은 급여수준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급여기준, 즉 청구인에 대한
 월 50,000 원의 보호급여는 단순 육체적 생존을 위한 최저생계비인 1 인당 월 105,000 원에
 못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하기 그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헌법 시행되고 있는 급여
 수준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이와 같은 생계보호는 피청구인이 1994. 1 경 고시한 생활
 보호사업지침상의 1994 생계보호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
 의 위와 같은 고시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고시의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헌
 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거택보호대상증명인 | 2 봉 |
| 1. 위임장 | 1 봉 |
| 1. 1994 년 생활보호사업지침 표지 및 내용 | 각 1 봉 |

1994. 2. 2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남 진

선 배 재 판 소 기 중

변호사 이 남 진 법륜사무소
 서울·서초구 시초1동1033-7(상원빌딩2층)
 전화·전라·5-2-1-5-330